



공정거래위원회



수신 참여연대

(경유)

제목 신고에 대한 회신

사건번호 : 2012서제3145

사 건 명 : (주)비지에프리테일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

피조사인 : (주)비지에프리테일

신 고 인 : 참여연대

위 사건을 2013제1020사건과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.

1. 피조사인의 24시간 영업의무 강제조항 설정행위 및 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는 사실 확인이 곤란하고 법위반여부 판단이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, 제46조 제4호에 의거하여 심의 절차종료 하였습니다.

2. 피조사인의 중도해지위약금에 대한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행위는 가맹계약 체결 전의 행위로서 구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(이하 '가맹사업법'이라 함)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, 거래 개시 전에는 거래상 지위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 2 제1항, 제46조 제1호, 제12조 제1항 제31호에 의거하여 심의절차종료 하였습니다.

※ 중도해지위약금에 대한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민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처리하였습니다.

3. 피조사인의 영업지역 침해행위 관련은 피조사인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보장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였으므로 구 가맹사업법위반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1항, 제47조 제1항에 의거하여 무혐의 하였습니다. 끝.